

고 시

1. 안양시 고시 제2024-9호(2024. 1. 12.)호로 변경 결정된 평촌신도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결정(변경) 고시하며, 같은 법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.

2. 관계도서는 안양시청 도시계획과(☎031-8045-2567)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.

가. 평촌신도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승인조서 : 붙임 참조
나. 관계도면 : 따로 붙임(게재생략). 끝.

2024. 9. 25.

안 양 시 장

평촌신도시 도시관리계획(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) 결정(변경) 조서

1.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한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구분	도면표시 번 호	구역명	위 치	면 적(㎡)	비고
기정	1	평촌신도시 지구단위계획구역	안양시 평촌신도시 택지개발사업지구 내	5,153,952.3	

2. 용도지역·용도구역에 대한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구 분		면적(㎡)			구성비 (%)	비고
		기정	변경	변경후		
합 계		5,153,952.3	-	5,153,952.3	100.0	
주거 지역	소계	3,474,877.8	-	3,474,877.8	67.4	
	제1종일반주거지역	970,320.9	-	970,320.9	18.8	
	제2종일반주거지역	419,165.1	-	419,165.1	8.1	
	제3종일반주거지역	2,085,391.8	-	2,085,391.8	40.5	
상업 지역	소계	885,151.8	-	885,151.8	17.2	
	중심상업지역	657,533.9	-	657,533.9	12.8	
	일반상업지역	227,617.9	-	227,617.9	4.4	
공업 지역	일반공업지역	33,667.4	-	33,667.4	0.6	
녹지 지역	자연녹지지역	760,255.3	-	760,255.3	14.8	

※ 기정은 안고 제2021-293호(2021.12.10)에 근거 함.

3.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결정(변경) 조서

가. 교통시설

- (1) 도로(변경없음)
- (2) 지하보도(변경없음)
- (3) 자동차정류장(변경없음)
- (4) 주차장(변경없음)

나. 공간시설

- (1) 광장(변경없음)
- (2) 녹지(변경없음)

(3) 공원(변경없음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공원명	시설의 세분	위치	면적㎡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55	공원	어린이 공원	평안동 896-3	4,815.6	-	4,815.6	891230	초원마을 세경아파트 옆 (하부 공공청사와 중복결정 375.8㎡)

(4) 공공공지(변경없음)

다. 공공문화체육시설

(1) 공공청사(변경)

구분	도면 표시 번호	시설명	시설의세분	위치	면적(㎡)			최초 결정일	비고
					기정	변경	변경후		
기정	3	공공청사	우체분국2호	부림동 1605-3	578.2	-	578.2	921229	
기정	4	공공청사	경찰서	부흥동 1105	9,852.9	-	9,852.9	891230	
기정	5	공공청사	구청,보건소	달안동 1111	17,903.0	-	17,903.0	891230	
기정	6	공공청사	우체국	달안동 1110	4,053.1	-	4,053.1	891230	
기정	7	공공청사	시청 및 시의회	부림동 1590	60,736.2	-	60,736.2	891230	
기정	8	공공청사	교육청	부림동 1592	9,859.9	-	9,859.9	891230	
기정	8	공공청사	소방서	부림동 1592-1	5,498.0	-	5,498.0	891230	
기정	8	공공청사	세무서	부림동 1592-2	3,438.9	-	3,438.9	891230	
기정	9	공공청사	법원,검찰청	부림동 1593	18,245.6	-	18,245.6	891230	
기정	10	공공청사	동사무소 소방소	범계동 1051-1,3	3,063.2	-	3,063.2	921229	
기정	11	공공청사	우체분국1호	귀인동 923	2,378.4	-	2,378.4	921229	
기정	13	공공청사	법원 (등기소)	관양동 1588-18	3,132.3		3,132.3	891230	
신설	43	공공청사	동사무소	평안동 896-3,4	-	증)988.9	988.9	-	어린이공원(55호) 일부중복결정 (375.8㎡)

※ 공공청사 12 중앙장비관리소 폐지- 안양시 고시 제2020-96호(2020. 5. 14.)

※ 결정(변경) 사유서

도면 표시 번호	시 설 명	변경 내용	결정(변경)사유
43	공공청사	* 공공청사 신설 ● 공공청사/동사무소 A=988.9㎡	1. 평안동 행정복지센터의 노후화와 업무공간 협소 등에 따라 「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종합관리계획」 건립 1순위인 평안동 행정 복지센터를 건립하여, 주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. 2. 현 평안동 행정복지센터의 주차공간 및 부 지의 협소로 인한 공간확보를 위하여 초 원어린이공원 시설부지의 상부는 기존 어 린이공원으로 변경없고, 하부는 일부를 공 공청사로 중복 결정(신설)하고자 함.

(2) 학교(변경없음)

(3) 연구시설(변경없음)

(4) 사회복지시설(변경없음)

(5) 문화시설(변경없음)

라. 유통 및 공급시설

(1) 시장(변경없음)

(2) 수도공급설비(변경없음)

(3) 전기공급설비(변경없음)

(4) 유류저장 및 송유시설(폐지)(변경없음)

(5) 방송·통신시설(변경없음)

(6) 열공급설비(변경없음)

(7) 공동구(변경없음)

마. 환경기초시설

(1) 하수도(변경없음)

(2) 폐기물처리시설(변경없음)

4.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

가. 상업용지(변경없음)

나. 주택용지(변경없음)

다. 주거지역내 공공시설

- (1) 근린생활시설용지(변경없음)
- (2) 학교용지(변경없음)
- (3) 주차장(변경없음)
- (4) 공공업무 및 종교시설(변경)

구분	도면 번호	가구 번호	면적 (㎡)	획 지		비 고
				위치	면적(㎡)	
기정	동	동1	1,186.6	비산동 1101-5	598.4	동주민센터
				비산동 1101-4	588.2	동주민센터
기정	동	동2	595.1	관양동 1588-1	595.1	동주민센터
기정	동	동3	1,222.7	비산동 1103-1	619.0	동주민센터, 노유자시설, 제1,2종근린시설
				비산동 1103-2	603.7	
기정	동	동4	613.1	평촌동 896-4	613.1	동주민센터
변경	동	동4	988.9	평촌동 896-3	375.8	동주민센터 (초원어린이공원 (375.8㎡)일부중복)
				평촌동 896-4	613.1	
기정	동	동5	1193.5	호계동 1056-2	1193.5	동주민센터, 노유자시설, 제1,2종근린시설
기정	동	동6	640.2	평촌동 933-4	640.2	동주민센터
기정	동	동6-1	643.5	평촌동 933-5	643.5	동주민센터, 노유자시설, 제1,2종근린시설
기정	동	동7	562.5	호계동 1118	562.5	동주민센터

※ 도면번호 '파' '도' '종'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은 변경 없음.

- (5) 공급설비시설(변경없음)
- (6) 일반의료시설(변경없음)
- (7) 사회복지시설(변경없음)

라.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(변경없음)

5. 건축물의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 계획 결정(변경)조서

가. 상업용지(변경없음)

나. 주택용지(변경없음)

다. 주거지역내 공공시설

- (1) 근린생활시설용지(변경없음)
- (2) 학교 및 유치원용지(변경없음)
- (3) 주차장(변경없음)
- (4) 공공업무(동주민센터)(변경없음)
- (5) 공공업무(동주민센터 및 노유자시설 등)(변경없음)
- (6) 공공업무(파출소)(변경없음)
- (7) 공공업무(도서관)(변경없음)
- (8) 마을회관(경로당)(변경없음)
- (9) 종교시설(변경없음)
- (10) 공급설비시설(변전소)(변경없음)
- (11) 공급처리시설(폐기물처리시설)(변경없음)
- (12) 의료시설(변경없음)
- (13) 사회복지시설(변경없음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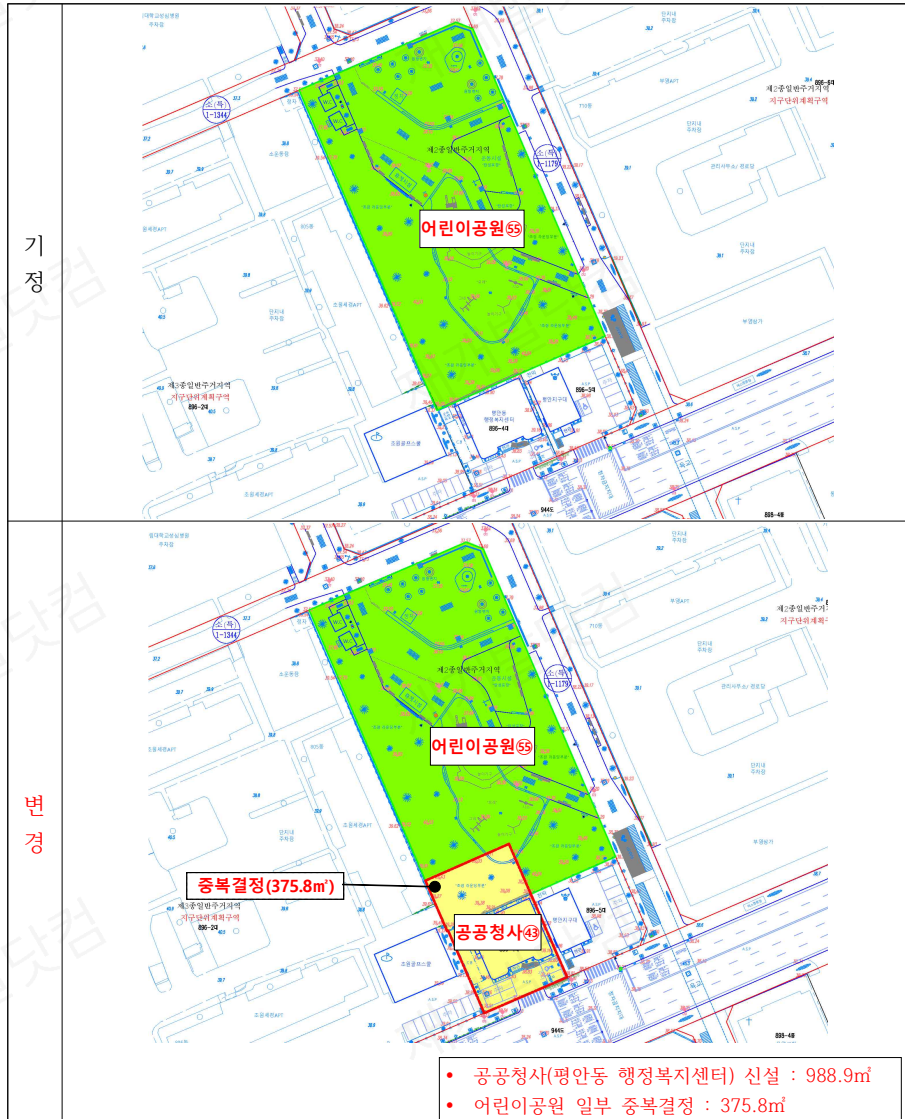
라.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(변경없음)

6.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7.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결정(변경) 조서(변경없음)

[붙임] 관련도면

- 지구단위계획 구역 및 용도지역 결정도면(변경없음)
-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

-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

-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결정(변경)도

